

자연·문화·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
Jeju! Advancing the Value of Nature, Culture and People

귀농귀촌 정책과 지원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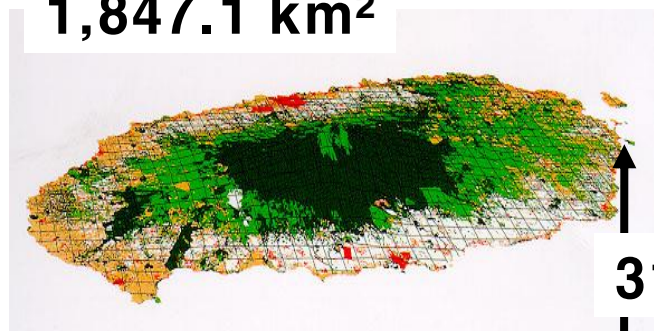
친환경농정과 농업경영담당
오용화(710-3053)

제주농업의 중요성



제주도는 작지만 . . .

1,847.1 km²



31km

73km

- 서울면적 (**605.5 km²**)의 3배
- 전국의 (**99,720 km²**)의 1.85%
- 남 · 북한 국토면적 (**220,000 km²**)
0.84%

그러나
제주농업은
크다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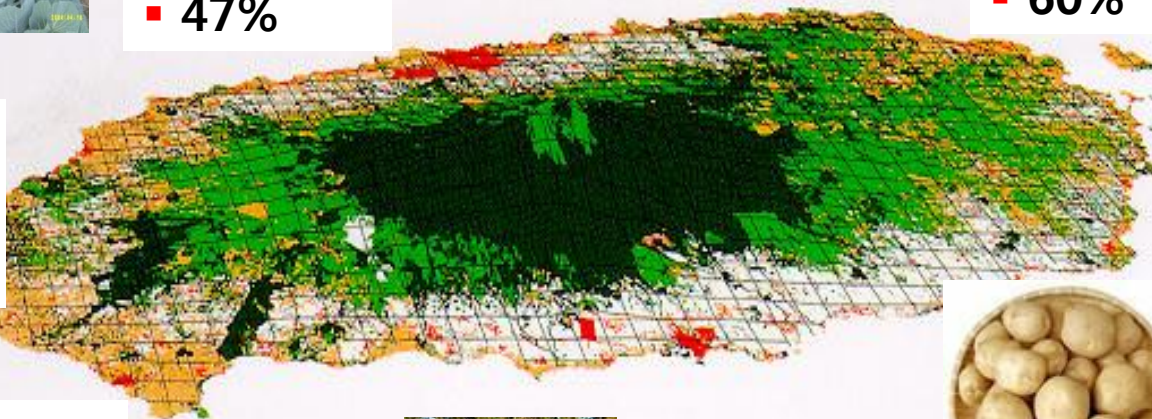
- 양배추
- 11.9만톤
- 47%



- 당근
- 6.8만톤
- 60%



- 마늘
- 4.5만톤
- 14%



- 월동무
- 30.5만톤
- 26%



- 양파
- 7.4만톤
- 3%



- 감귤
- 69만톤
- 99.8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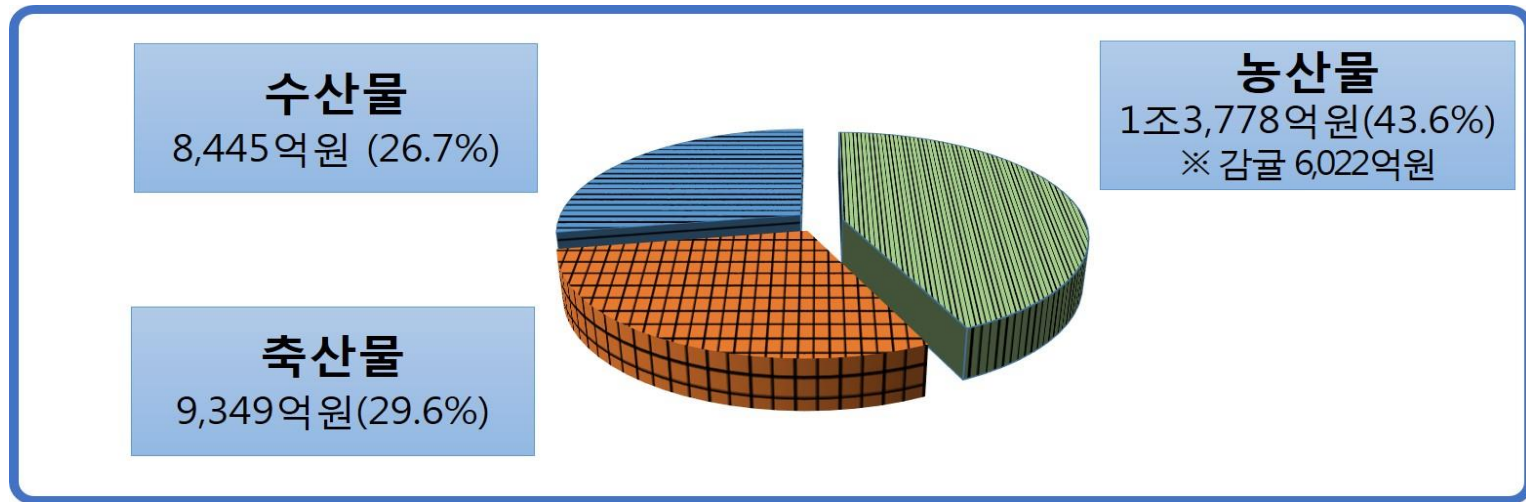


- 감자
- 3.5만톤
- 9%

농축산식품 기본현황



○ 1차산업 조수입['15] ⇨ 3조 1,572억원('14년 3조 1,094억원 대비 1.5% 증가)



※ [농산물] 2014년 1조 4,225억원 대비 3.0% 감소

[수산물] 2014년 8,445억원 대비 5.0%증가 / [축산물] 2014년 8,424억원 대비 11.0%증가

- 산업구조('14잠정)
- ☞ 1차 산업 12.7% (전국 2.3%)
 - ☞ 2차 산업 2.8% (전국 30.5%)
 - ☞ 3차 산업 84.5% (전국 67.2%)

농축산식품 기본현황



농업분야

농가 및 농가인구 : 33,491가구·농가 93,416명

○ 도 전체 인구 641,355명의 14.57%

경지면적 : 62,642ha(전체면적 184,29ha의 34.0%)

○ 밭 : 62,624/99.97%, 논 : 18/0.03%

전국 경지면적 1,679,023ha의 3.73%차지

농가소득 : 43,811천원 ※ (농가부채) 54,555천원(전국 1위)

축산분야

농가 및 농가인구 : 5,226가구·20,085명(농업농가 인구에 포함)

주요 가축 :: 소 34천두, 돼지 554천두, 닭 1,659천두, 밀 15천두

제주 귀농귀촌 통계 자료



귀농귀촌 가구 현황

구분	계			'13년			'14년			'15년		
	합계	제주	서귀	계	제주	서귀	계	제주	서귀	계	제주	서귀
가구	18,451	11,047	7,404	5,027	3,104	1,923	5,887	3,624	2,263	7,537	4,319	3,218
세대원	26,438	16,208	10,230	7,075	4,498	2,577	8,361	5,281	3,080	11,002	6,429	4,573

행정시별 귀농현황

구분	계	'13년			'14년			'15년		
		계	제주	서귀	계	제주	서귀	계	제주	서귀
가구	930	250	127	123	290	135	155	390	179	211
세대원	1,628	448	233	215	524	274	250	656	313	343

주요농작물 소득분석자료[10a]

품목별	조수입 (천원)	경영비 (천원)	소득 (천원)	수량 (kg)	단가 (원)	소득율 (%)
노지감귤	3,464	1,152	2,312	3,205	1,081	66
한라봉	13,917	6,266	7,651	3,257	4,273	55
참다래	5,049	2,196	2,853	2,002	2,522	56
당 근	2,211	1,587	624	4,277	517	28
양배추	1,232	784	448	5,578	221	36
가을감자	1,734	1,239	495	1,682	1,031	28
맥주보리	443	240	203	498	891	45

농업인의 정의[범위]



- 1,000m² 이상의 농지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
-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 또는 농지경작 활동 참여한 자
 - ☞ 농업법인, 농장주 등 농업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, 경작활동에 참여(실제 노동력을 제공)하였거나, 농업인의 세대원으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경영, 경작활동에 참여 한 자
 - ※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3호(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한 자)
- 농지에 330m² 이상의 고정식온실, 버섯 재배사, 비닐하우스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, 농작물·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
- 농업경영을 통하여 농산물 연간 판매액의 120만원 이상인 자
- 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에서 농산물 유통·가공·판매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

농업경영체 등록



■ 신규등록

○ 대상 경영체 : 신규 창업 및 후계농업 경영체 등

※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 시 등록 가능

○ 신청자격 (농업인)

-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,000m²(300평)이상,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,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

○ 등록대상 농지 :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농업에 이용되는 농지

○ 등록 대상정보 : 인적정보,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, 가축정보 등 60개항목

○ 신청기관 : 농업인은 주민등록지,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

○ 신청방법

-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 방문, 우편, 모사전송 등의 방법 제출

※ 전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임으로 신규신청 방법 제외

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(품질관리과) 064-728-5261. www.naqs.go.kr

농지의 범위



▣ 농지의 정의

- 전·답, 과수원,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,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(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 제외)
 - 목초·종묘·인삼·약초·잔디 및 조림용 묘목
 - 과수·뽕나무·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
 -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(조경목적 식재 제외)

▣ 「초지법」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

- 지목이 전·답,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
-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,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

귀농 귀촌 동향



▣ 귀농 귀촌 현황

○ (2014년도) 귀농 귀촌가구 : 44,586가구 (제주 귀촌 3,569, 귀농 306가구)

※ 제주지역 귀촌가구는 '13년 204가구에 비해 1,649% 증가

○ (연령층) 40대이하 젊은 층 농촌유입 증가 추세

- 30대이하 25%, 40대이하 33%, 50대이하 26%, 60대이상 16%

▣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농림축산식품부 / 2015.7.21)

○ 귀농인 안정정착을 위한 특별지원 근거 등 명시

- 귀농 후 3년 이내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이 어렵다고 판단되면, 정책 자금 지원

○ 매 5년마다 귀농 귀촌 지원 종합(시행)계획 마련(국가, 지자체)

○ 귀농 귀촌 현황 등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관리

○ 민간조직에서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제도 마련

귀농·귀촌 지원사업 안내



- 1.**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
- 2.**귀농인 영농현장 실습지원사업
- 3.**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
- 4.**귀농인 삶의 질 향상 지원
- 5.**농기계 임대사업
- 6.**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

 질의 응답

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(농식품부)



○ 목적

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마련을 위한 지원, 신규 농업 인력육성 및 농업·농촌,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

○ (사업대상자)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(하는)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,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·제조·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“농촌”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(예정인 자)

* 단, 「귀농 농업창업 계획서」 제출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('16. 7. 1)

*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
※ 제주특별법 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

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



○ 지원 자격 및 요건

(원칙적으로 이주기한, 거주기간,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)

- (이주기한) 농촌지역 전입 일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(단독세대 가능)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
- (거주기간) 농촌지역 전입 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
- (교육이수실적) 농식품부, 농진청, 산림청,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

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

@ 지자체 교육(8시간 이수) 필수 * '16. 7. 1일 이후 적용

@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% 인정, 최대 40시간까지 인정

@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


《예비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》

♣ 창업계획서 제출(신청자 → 행정시) ⇒ 창업계획 심사(행정시) ⇒ 주소 이전(귀농인) ⇒ 확인서(계획) 발급(행정시 → 신청자) ⇒ 농협은행에 확인서 제출(귀농인 → 농협) ⇒ 신용조회 및 융자(농협 → 귀농인) ⇒ 창업자금 실행 통보(농협·귀농인 → 행정시) ⇒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이전·말소 실행(2년 이내, 귀농인) ⇒ 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·말소 조치 발생시 결과 통보(1개월 이내, 귀농인 → 행정시)

* 행정시(제주시 농정과 귀농지원담당,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정담당)

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



○ 지원제외 대상

-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장 이탈로 **사업이 취소된 자**

*** 예비귀농인이 사업대상자로 선정 이후,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,
일정기간 내**

**퇴직이나 사업자등록 이전·말소를 하지 않거나, 사업을 실행 하지 않은
자**

- 금융기관에 **연체 중인 자**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

회생중인 자

- 창업자금을 부당 사용하거나,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

*** 목적외 사용, 허위자료 제출, 행정기관의 신청제외 통보 등**

- 병역미필자, 고등학교·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

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



○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

<농업 창업>

- 경종분야 : 농지 구입, 하우스시설, 농기계 구입, 관수시설, 화물자동차 가공시설 신축·구입(수리), 벼싯재배사, 묘목구입 등
- 축산분야 : 축사부지 구입, 축사 신(증)축 및 시설 개보수, 농기계 구입 등
- 농촌비즈니스 분야 :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, 농어촌민박(230m² 이하), 농촌레스토랑*, 농식품 가공 및 유통시설 등

* “농가레스토랑”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면서, 자가생산 및 지역생산 농산물을

식재료를 이용하여 향토음식점 및 전통찻집을 말함

<주택 구입 · 신축>

-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용자 지원
- 읍·면지역의 경우,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
- 대상주택 :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

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



○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농업 창업자금 :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

[2%,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]

-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: **세대당 5천만원 한도 이내**

[2.7%(만65세 이상은 2%),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]

☞ **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**,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출 신청자 농지, 건축물 평가 등 **대출심사 결과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** 변경될 수 있음

※ 대출신청 : 농업 **창업자금 2회**, 주택 구입 · 신축 자금 **1회** 신청 가능

→ 예) 지원신청 가능액(창업자금) = 3억원 -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

귀농인 영농현장 실습지원사업(농업기술원/행정시)



○ 사업시행 : 농업기술센터(제주, 서귀포, 동부, 서부)·제주시(농정과)

○ 사업량 : **21명 · 116백만원**

○ 사업내용

- 선도농장 3~7개월간 영농체험(현장실습교육)
- 연수지원대상자에게 교육훈련비 지원(월 80만원)

※ 단, 매월 20일 이상 근무시 지원

- 선도농가에게 연수기간 동안 멘토수당 지원(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)

○ 연수지원 대상자

-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농업종사를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

○ 선도농가

- 농업기술원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인, 전농업 및 우수농업법인 등

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(행정시)



○ 귀농인, 고령농, 여성농 등 영세농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

- 지원대상 : 귀농인, 영세농(**0.5ha미만**), 고령농(**65세이상**), 여성농업인

○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사업

- 지원대상 :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
- 지원기준 : **농가당 200㎡이하(60평), 사업비 7,000천원(보조 60%)**
- 지원내용 : 경작지내 암반제거를 위한 장비임차료 지원
- 신청방법 : 읍·면동사무소

○ 발작물 소형농기계 지원사업

- 지원대상 :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
- 지원기준 : **농가당 1기종 1대, 사업비 6,000천원(보조 60%)** 한도 내
- 지원내용 : 경운기, 관리기, 파종기 등 소형 발작물 농업기계 지원
- ※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농업기계 또는 품질인증 받은 기종
- 신청방법 : 읍면동사무소



○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사업

- 지원대상 :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
- 지원기준 : **농가당 1동 165m² (50평)이하**
- 사업비 : 개소당 8,745천원(지원단가 m²당 53천원)
- 지원내용 : 소규모 육묘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
- 신청방법 : 읍면동사무소

○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

- 지원대상 :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
- 지원기준 : **농가당 16.5m² 이하(5평), 사업비 12,500천원(보조 60%)**
- 지원내용 : 저온저장고 시설비 일부 지원
- 신청방법 : 읍면동사무소

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



○ 소규모 채소·화훼비닐하우스시설 지원사업

- 지원대상 :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
- 지원기준 : **농가당 1동 1,650m² 이하(500평)**
- 사업비 : 59,400천원(지원단가 3.3m²당 120천원)
- 지원내용 : 채소·화훼재배용 무가온 비닐하우스 시설비 일부 지원
- 신청방법 : 읍면동사무소

○ 발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

- 지원대상 :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
- 지원기준 : **농가당 0.1ha ~1ha 이내**
- 사업비 : 3,100천원(보조 60%) 지원
- 지원내용 : 발작물 스프링쿨러 시설비 지원
- 신청방법 : 읍면동사무소

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



○ 영농 도우미 지원

- 지원대상 : 사고(2주이상 진단), 질병(3일이상 입원)으로 영농활동 곤란한 80세이하 농업인
- 지원기준 : 42,000원/1일(1일 기준 60,000원의 70%, 자부담 30%)
(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 지원)
- 지원일수 : 최대 10일
- 신청장소 : 지역농협

○ 가사도우미 지원

- 지원대상 :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거주 65세이상 가구
- 지원기준 : 가사지원 도우미 활동비 회당 8,400원 지원(연간 12일이내)
- 신청장소 : 지역농협

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



○ 농가 출산도우미 지원

- 지원대상 :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
- 지원기준 : 48,000원/1일(1일 기준 60,000원의 80%)
- 지원일수 : 최대 45일
- 신청방법 : 읍면동사무소

○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지원

- 지원대상 : 고등학교 재학 자녀가 있는 농어촌지역 거주 농업인
- 지원기준 :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(120만원 내외/연)
- 신청방법 : 읍면동사무소

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



○ 농어업인 안전공제료 지원

- 지원대상 :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에 주소를 두고,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
- 지원기준 : 국고 50%, 지방비 25%, 농·감협 25%(비조합원 자부담 25%)
- 사업내용 : 농업인이 농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
- 신청방법 : 농·감협

○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
- 지원대상 : 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중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
- 지원금액 : 건강보험료의 50% 지원(보건복지부 22%, 농식품부 28%)
- 지원형태 및 납부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

농업인인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



○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

- 지원대상 :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
- 지원내용 :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
내에서 '16년 최고 40,950원/월 지원
- 사업관리주체 : 국민연금공단

○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

- 지원대상 : 경영개선, 브랜드개발, 마케팅 홍보 등 전문업체 컨설팅비
- 지원내용 : 총사업비 1천만원 범위내 50% 보조
- 사업시행주체 : 행정시

농기계 임대사업 추진(농업기술센터)



○ 농기계 임대사업

- 사업시행 : 농업기술센터(제주, 서귀포, 동부, 서부)
- 대여조건
 - 농작업 안전공제(상해보험)에 가입되어 있는 자
 - 농기계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자
- 대여기간 : 1회, 1 ~ 3일 이내
- 임대농기계 종류
 - 트랙터, 소형굴삭기, 파쇄기, 로타리, 콤바인, 파종기, 퇴비살포기, 비료살포기, 동력제초기 등
- 임대료 : 기종별 책정(트랙터48,000원, 파종기 12,000원, 굴삭기41,000원)



○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(이차보전)

- 지원대상 : 농어업인, 농어업법인, 생산자 단체, 수출업체 등

- 융자한도 :

(1) 농어가 :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

(2) 단 체 :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

* 귀농인으로 인정된 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영농규모 관계없이

세대당 10,000천원까지 이차보전(지원)

- 융자금리 : 0.9%(시중금리와 이자차액 보전 - 기존 1.4%)

- 융자조건 : 운전자금 2년 상환

- 신청기간 : (상반기) '16. 3. 31일까지, (하반기) 7.28~8.14

- 신청장소 : 주소지 읍면사무소, 동주민자치센터

귀농 · 귀촌인 지원센터 운영



○ 귀농·귀촌인 지원센터 운영 : 11개소

- 도(1개소) : 친환경농정과
- 농업기술원(5개소) : 농업기술원, 제주,서귀포, 동부, 서부센터
- 행정시(2개소) : 제주시, 서귀포시
- 농협(3개소) : 제주농협지역본부, 제주시지부, 서귀포시지부

○ 제주정착정보 포털사이트 “제주살기” 운영

- 운영체계 : 취업과 창업, 육아와 보육 등
- 제주정착이야기 : 귀농, 창업, 문화예술 정착사례 등
- 정착지원 프로그램 :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 등
- 커뮤니티 : 공지사항, 멘토링 서비스, 이주민 카페 소개 등

⇒ 홈페이지 : <http://jejulife.jeju.go.kr>

자연, 문화,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**제주**

감 사 합 니 다

친환경농정과 농업경영담당

담당자 : 오 용 화 (064-710-3053)

귀농귀촌종합센터 **1899-9097**